

의안번호	2201633
의 퇴 인	김예지의원
회 답 일	2024. 8. 20.
추계번호	24C2076

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조(도서관의 책무)	도서관이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하여야 하는 조치인 편의시설 확충에 있어 '장애인열람실'을 포함하도록 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7조(도서관의 책무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「도서관법」은 제7조에서의 '편의시설'에 대한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고,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(이하 약칭인 “장애인등편의법”이라 함)의 편의시설 종류¹⁾를 준용하여

1) 「장애인등편의법」 제8조(편의시설의 설치기준)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,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이 경우 편의시설의 종류별 안내 내용과 안내 표시 디자인 기준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.
 「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」 제4조(편의시설의 종류)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적용하고 있음

- 구체적으로 「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」 별표2에서 ‘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’을 규정하고 있는데, 도서관과 관련하여서는 제1종근린생활시설 내 공공도서관과 교육연구시설 내 도서관에 대하여 의무 설치대상이 되는 편의시설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있음

- 제1종근린생활시설 내 공공도서관에는 주출입구접근로, 장애인전용주차구역,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, 출입구(문), 복도, 계단 또는 승강기, 화장실, 점자블록, 경보 및 피난설비 등을 의무 설치해야 함(열람석 없음)
- 교육연구시설 내 도서관(1,000㎡ 이상)에는 주출입구접근로, 장애인전용주차구역,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, 출입구(문), 복도, 계단 또는 승강기, 화장실, 경보 및 피난설비, 열람석 등을 의무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

□ 개정안과 같이 확충되어야 할 편의시설에 장애인 열람실을 포함하도록 할 경우 의무 설치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, 현재 장애인 열람실이 설치된 현황을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애인 열람실의 규모나 비치기기 등 설치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합리적으로 재정소요를 추계하는 것이 곤란함

- 「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」 별표2에 따르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관련한 설치기준에 있어 도서관 전체 열람석 수의 1퍼센트 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와 위치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
- 다만, 개정안에서는 열람석이 아닌 의무 설치 대상으로 ‘장애인 열람실’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설치 기준은 「도서관법」 과 타 법령에서 확인할 수 없었음
- 참고로 ‘2021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통계조사 결과보고서(’20년 기준)’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258개 공공도서관 중 ‘장애인 열람실’ 설치현황은 다음과 같았음

[표] 공공도서관 장애인코너 및 장애인자료실 설치 현황

(단위: 개)

조사대상 공공도서관 수	총 응답 공공도서관 수	장애인코너	장애인자료실
1,172	258	238	20

자료: 문화체육관광부

- 따라서 개정안은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사항을 현 단계에서 파악하기 어려워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(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)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	이진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na.go.kr